

## [ 정 정 대 비 표 ]

#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썸글로벌EMP증권투자신탁1호(혼합-재간접형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험 등급 변경(3 등급→4 등급)</li> <li>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</li> <li>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</li> <li>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li> <li>-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li> </ul>
효 력 발 생 일	2023년 07월 04일

### ■ 정정대비표

#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	결산에 따른 위험 등급(3등급→4등급) 및 문구 변경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u>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u>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6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6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06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과세	문구 추가	- <문구 추가>	- <u>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u>

		- <문구 추가>	<p>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p>
--	--	---------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	결산에 따른 위험 등급(3등급→4등급) 및 문구 변경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6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6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06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

			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과세	문구 추가	- <문구 추가>  - <문구 추가>	- <u>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 - <u>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<u>2023.07.04: 위험 등급 변경(3등급 →4등급),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,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3.06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 대상 ① ~ ⑧ (생략) ⑨ 증권의 대여 <주식 추가>	가. 투자 대상 ① ~ ⑧ (현행과 동일) ⑨ 증권의 대여 주2) <u>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 1. <u>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 2. <u>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</u>

		<p>⑩ 증권의 차입 <u>&lt;주석 추가&gt;</u></p> <p>⑪ (생략) 나. 투자 제한 (생략)</p>	<p>⑩ 증권의 차입 주3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</p> <p>⑪ (현행과 동일) 나. 투자 제한 (현행과 동일)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(3등급→4등급) 및 문구 변경	<p>가. ~ 나. (생략) 다. 기타 투자위험</p> <p>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- <u>&lt;위험 추가&gt;</u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u>&lt;정정 전&gt;</u>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<u>미</u> 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다양한 글로벌 자산(주식, 채권, 금, 원자재 등) 관련 국내·외 집합투자증권(ETF포함)에 분산투자하</p>	<p>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기타 투자위험</p> <p>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- 증권대차거래 위험: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u>&lt;정정 후&gt;</u>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<u>경과</u>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다양한 글로벌 자산(주식, 채권, 금, 원자재 등) 관련 국내·외 집합투자증권(ETF포함)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</p>

		<p>여 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상품으로 <u>6단계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</u> 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</p> <p>[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 분류 기준 -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]</p>	<p>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8.5812%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2023.06.07)</p> <p>&lt;삭 제&gt;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p>1) ~ 2)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</p> <p>* &lt;신설&gt;</p>	<p>1) ~ 2) (현행과 동일)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 <u>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</p> <p>* <u>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기타비용, 증권거래비용, 금융비용 내역</u></p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문구 조정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<u>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나. 과세</p> <p>투자소득에 --- (생략) --- 나누어집니다.</p> <p>(1) ~ (3) (생략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입자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u>10년간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p> 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</u>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지급일의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</u> 가격으로 당해 <u>종류</u>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과세</p> <p>투자소득에 --- (생략) --- 나누어집니다.</p> <p>(1) ~ (3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입자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- 수령요건: 55세 이후 &lt;삭제&gt;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p> 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</u> 이내. &lt;삭제&gt;</p>

		<p>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p> <p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p> <p>③ (생략)</p> <p>[세액공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li> <li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&lt;신설&gt;</li> </ul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 및 J-P2e 가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액공제:</li> <li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</li> </ul>	<p>&lt;삭제&gt;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[세액공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li> <li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li> </ul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 및 J-P2e 가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액공제:</li> <li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 &lt;삭제&gt;</li> </ul>
--	--	--	--

		<p>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	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
--	--	---	---

**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**
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6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요약재무정보 - <항목 추가>	가. 요약재무정보 -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, <주식의 매매회전율>

**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**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3.06.14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(2023. 04. 03 실행)	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 (1) (생략) (2) 주요업무 1) (생략) 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생략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	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 (1) (현행과 동일) (2) 주요업무 1) (현행과 동일) 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

		<p>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(이하 생략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, 22층 ☎ 02-2168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a href="http://www.shinhanaitas.com">www.shinhanaitas.com</a></p> <p>(2) (생략)</p> <p>다. ~ 라. (생략)</p>	<p>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</u>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☎ 02-2168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a href="http://www.shinhanfundpartners.com">www.shinhanfundpartners.com</a></p> <p>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~ 라. (현행과 동일)</p>
--	--	--	---

**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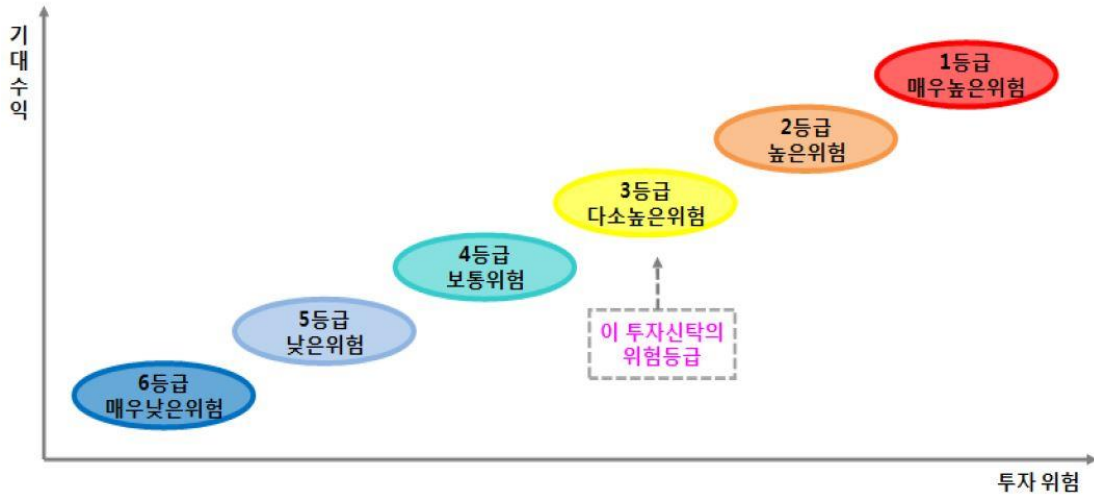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</p>	<p>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</u>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		(이하 생략)	81조제3항제1호의 <u>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현행과 동일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문구 조정	가. 정기보고서 (생략) 나. 수시공시 (1) (생략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( <u>생략</u> )--- 합니다. 1. ~ 7. ( <u>생략</u> 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 10. ( <u>생략</u> ) (3) ~ (4) ( <u>생략</u> )	가. 정기보고서 (현행과 동일) 나. 수시공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( <u>생략</u> )--- 합니다. 1. ~ 7. ( <u>현행과 동일</u> 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( 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 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( 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 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 10. ( <u>현행과 동일</u> ) (3) ~ (4) ( <u>현행과 동일</u> )

<정정 전>
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다양한 글로벌 자산(주식, 채권, 금, 원자재 등) 관련 국내·외 집합투자증권(ETF포함)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상품으로 6단계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
-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, 채권, 원자재 및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


※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[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-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]

위험등급		분류기준
1등급	매우 높은 위험	-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-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2등급	높은 위험	- 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3등급	다소 높은 위험	-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4등급	보통 위험	-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5등급	낮은 위험	- 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6등급	매우 낮은 위험	-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-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
- "고위험자산"은 주식, 상품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"중위험자산"은 채권(BBB- 등급 이상), CP(A3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"저위험자산"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·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
-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·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

[위험등급 분류기준 - 설정 후 3년 경과 시]

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수익률 변동성 (표준편차)	25%초과	25%이하	15%이하	10%이하	5%이하	0.5%이하

\*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 : 일정 기간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,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값을 계산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

는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.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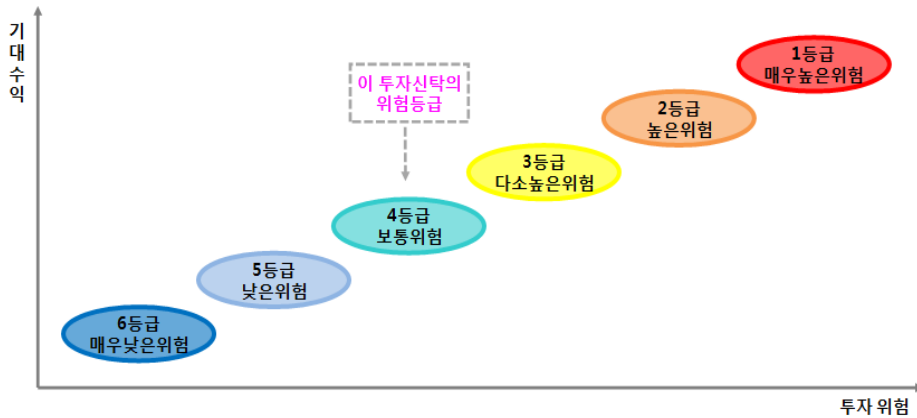
※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.

<정정 후>
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다양한 글로벌 자산(주식, 채권, 금, 원자재 등) 관련 국내·외 집합투자증권(ETF포함)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**8.5812%**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**4등급(보통 위험)**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2023.06.07)

-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, 채권, 원자재 및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


※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위험등급 분류기준 - 설정 후 3년 경과 시]

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수익률 변동성 (표준편차)	25%초과	25%이하	15%이하	<b>10%이하</b>	5%이하	0.5%이하

\*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 : 일정 기간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,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값을 계산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.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.

※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.

- 위험등급 변경 내역

변경일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2023.07.04	3등급	4등급	▶ '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' 기준 위험등급 적용 - 수익률 변동성: 8.5812%

<끝>.